

## 제31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록 (서면회의)

1. 회의일시 : 2012. 6. 4.(월)

2. 장 소 : 방송통신위원회

3. 참석위원 : 이계철 위 원 장  
홍성규 부위원장  
김충식 상임위원  
신용섭 상임위원  
양문석 상임위원 (5인)

4. 불참위원 : 없음

### 5. 회의내용

#### ① 서면회의 사유

- 의결 : 「방송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」 제14조(서면결의)제1항제1호에 따른 제2009-30차 전원회의(2009.7.9), 제2011-17차 전원회의(2011.3.21), 제2011-67차 전원회의(2011.11.30)에서 의결한 '토론을 요하지 아니하는 일상적·반복적 안건 또는 경미한 안건'에 해당됨
- 보고 : 「방송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」 제14조의1(서면보고)제1항에 따른 '토론을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'의 안건에 해당됨

## ② 의결사항

### 가.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에 관한 건 - (주)에이클라엔터테인먼트 - (2012-31(서)-112)

- 「방송법」 제9조(허가·승인·등록 등)제5항에 의거, (주)에이클라엔터테인먼트의 방송채널 사용사업 등록 신청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함
- 주요 내용

#### < 등록내용 >

신청법인	채널명	방송분야 (방송유형)	대표자	편성 책임자	최대액출자자 (지분율)	납입자본금 (실질자본금)
(주)에이클라 엔터테인먼트	SPOTV+	스포츠 (텔레비전)	홍원의	조호영	홍원의(68.75%) 오주석(31.25%)	5억원 (9.9억원)

### 나. 외국방송 재송신 승인에 관한 건 - NBA properties, Inc 등 2개사 - (2012-31(서)-113)

- 「방송법」 제78조의2제1항 및 「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」 제21조제4항에 따라 국내에서 외국방송 재송신을 하고자 하는 2개 외국방송사업자의 외국방송 재송신 승인 신청 건에 대해 원안대로 조건을 부과하여 승인하기로 의결함
- 주요 내용

#### < 승인내용 >

외국방송 사업자명	방송채널명	국적	방송분야	방송언어
NBA properties, Inc	NBA TV	미국	스포츠	영어
LI TV INTERNATIONAL LIMITED	Life Inspired	말레이시아	생활문화	영어

#### < 승인조건 >

- ① 방송분야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 예정일로부터 3월 전까지 변경승인을 신청하고,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② 국내 지사, 사무소, 대리인 또는 채널명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.
- ③ 승인심사 당시 제출한 사업계획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.
- ④ 매년 3월 31일까지 직전 연도의 국내 송출현황 자료, 국내에서 발생한 매출액 현황 자료, 기여계획서상의 이행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.
- ⑤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결로 재송신 승인에 관한 세부 심사기준이 개정되었을 때,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에 맞추어 다시 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⑥ 승인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취소될 수 있다.
  - 방송내용이 방송법 제33조에 따른 심의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때
  - 승인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
  - 방송내용이 형법, 저작권법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는 때

**다. 「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」 제정안에 관한 건**

- (2012-31(서)-114)

- 방송법 제35조의5에 따라 신설된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 등을 규정한 규칙 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함

○ 주요 내용

① 평가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(안 제3조)

- 평가위원의 결원으로 인해 새로 위촉되는 위원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함
- 평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, 방통위 위원장이 지명하는 평가위원이 직무를 대행함

② 평가위원회 직무에 관한 사항(안 제5조)

-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 등 평가위원회의 직무 수행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은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방통위 의결로 확정함

③ 평가위원회 회의에 관한 사항(안 제7조)

- 긴급을 요하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·의결할 수 있음

④ 평가위원회 위원의 제척·기피 및 회피에 관한 사항(안 제8조)

- 평가위원이 안건과 관련하여 권리·의무 등의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, 심의·의결에서 제척되며, 평가위원 스스로도 회피할 수 있음
- 안건의 당사자도 해당 평가위원에 대해 기피를 신청할 수 있음

⑤ 분과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(안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)

- 평가위원회는 직무와 관련하여 전문적 사항을 검토하기 위해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음
- 분과위원회 위원은 평가위원장이 평가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위촉하며, 이 경우 외부 전문가를 분과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음

○ 향후계획

- 공고(관보 게재) 후 시행

**라.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에 관한 건 - (2012-31(서)-115)**

- 국회에서 요구한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속기록('10.12.8, 제72차 위원회)에 대해 「방송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」 제20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즉시 모두 음영처리 없이 열람형식으로 제출하기로 하고 의결함

### ③ 보고사항

#### 가. 「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」(고시) 제정안에 관한 사항

○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제정('12.5.23공포)됨에 따라 후속 조치로 과징금 세부 부과기준을 정하기 위한 고시 제정안을 보고 받고 원안대로 접수함

○ 주요 내용

##### ① 과징금 산정절차 및 기준 (안 제2조~제3조)

- 과징금 부과시 위반행위 주도 여부, 관련 방송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기준금액에 필수적 조정, 추가적 조정을 거쳐 산정하도록 규정

##### ② 과징금의 필수적 조정 (안 제4조)

- 필수적 조정 금액은 위반행위 기간 및 횟수에 따라 각각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가중한 금액을 합산하도록 규정

##### ③ 과징금의 추가적 조정 (안 제5조)

- 필수적 가중을 거친 금액에 위반행위의 주도 여부, 고의·과실 여부, 조사의 협조 여부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하도록 규정

○ 향후 일정(안)

- 행정예고 : '12년 6월

-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: '12년 6월

- 위원회 의결 : '12년 6월

#### 나. 공익채널 관련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및 고시 일부 개정안에 관한 사항

○ 공익채널 선정 절차 및 방법, 장애인 복지채널 도입에 따른 공익성 방송분야 개선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규칙 및 고시 일부 개정안을 보고받고 원안대로 접수함

○ 주요 내용

##### ①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개정안 주요 내용

- (신청서류) 공익채널 선정신청서류를 구체화하여 공익채널 선정신청서, 신청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규정 (안 제27조제1항)

- (사업계획서) 사업계획서를 작성함에 있어 공익채널 선정의 필요성, 전문편성 방송프로그램 제작 계획 등을 포함하여 구성 (안 제27조제2항)

② 공익성 방송분야(고시) 주요 내용

- 불필요한 예시 삭제 등 전문편성 내용을 간결하게 정리
- 종교 및 장애인 복지채널의 전문편성 내용 제외

○ 향후 일정

- 관계부처 협의, 행정예고 : '12. 6. 5 ~ 6. 25
- 규개위 심사, 위원회 의결 : '12. 6월